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월 21일, 김재원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국회(임사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8. 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5. 9. 16)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9. 18)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재원 의원)

현행법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등 중요 정책을 발표하는 경우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 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 담화 등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표에 대해 수어통역이 지원되지 않거나 수어통역 영상이 공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농인 등의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수어통역 지원 범위에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발표가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고,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여 농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적 주요 사항 발표 시 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수어통역) ①·② (생략)	제16조(수어통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여야 한다.</u>	③ ----- <u>국가적 주요 사항 및 중요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u> ----- ----- <u>수어통역을 반드시</u> ----- ----- ----- -----.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한국수화언어(이하 “수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로서, 현행법 제16조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수화언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

②국가와 국민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수어와 농문화를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③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는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이하 “모든 생활영역”이라 한다)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④농인등은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생략)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수어통역)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이 필요한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시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법 제16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책, 그 밖에 국민·주민 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11조의2(수어통역 지원)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같은 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수립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수립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
3. 그 밖에 국민 또는 주민 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그런데 수어통역 의무 지원 범위에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발표가 명시되지 않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나 대국민담화 등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표에 대해 수어통역이 지원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¹⁾.

이에 개정안은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적 주요 사항 발표 시 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농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참고로, 「장애인복지법」 제2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송국의

1) 비상계엄 선포, 장애인 '정보 접근' 이중고, 여성경제신문, 2024.12.9.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675>),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의 방송 프로그램에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법」 제69조제8항은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방통위는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방송 시청을 위한 수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 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14조(한국수어·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1.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2. 「당직선거법」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선거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3.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의 중계방송
4. 그 밖에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⑧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수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은 “국가적 주요 사항 및 중요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공표하도록 한바,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예시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 보이며, 「대한민국헌법」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른 긴급재정경제명령·긴급명령 또는 계엄선포를 한 경우 등이 국가적 주요사항의 예시가 될 수 있어 보임.

참고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²⁾는 재해, 재난, 민방위사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방송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률에 관한 개정안으로서 EBS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편·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는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이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정부 제출)과 재난방송 등을 실시할 경우 한국수어·문자 등을 통해 장애인이 재난 예보·경보체계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이 각각 제출되어 있음³⁾.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등을 송출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 발생의 예방·대피·구조·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54, 정부 제출, 2024.6.2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11,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2024.12.11.)이 발의되었으며, 과기방통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개정안에 대해 2회 심사(2024.9.3. 정부제출안 심사, 2025.1.6. 정부제출안 및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안 심사)하였으나, 행안부·국방부 등 관

문화체육관광부도 농인의 정보 접근권 강화 차원에서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나,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래 표와 같이 현행 법률의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임오경 위원장)

국가적 주요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법률에 예시하기 위하여 ‘국가적 주요 사항 및 중요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을 ‘국가비상 사태 등 국가적 주요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로 수정함.(안 제16조제3항)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의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1.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9. .

제 안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국가적 주요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법률에 예시하기 위하여 안 제 16조제3항 중 “국가적 주요 사항 및 중요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을 “국가비상사태 등 국가적 주요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로 수정함(안 제16조제3항).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6조제3항 중 “국가적 주요 사항 및 중요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을 “국가비상사태 등 국가적 주요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6조(수어통역) ① · ② (생략)	제16조(수어통역)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수어통역)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여야 한다.</u>	③ ----- ----- <u>국가적 주요 사항 및 중요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을----- ----- <u>수어통역을 반드시</u> ----- ----- ----- -----.	③ ----- ----- <u>국가비상사태 등 국가적 주요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u> ----- ----- <u>수어통역을 반드시</u> ----- ----- ----- -----.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④ ~ ⑥ (개정안과 같음)

법률 제 호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화언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을 “국가비상사태 등 국가적 주요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로, “수어통역을”을 “수어통역을 만드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수어통역) ①·② (생략)	제16조(수어통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 가비상사태 등 국가적 주요 사 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요 정책 등을----- <u>수어통역을 반드시</u> ----- ----- ----- --.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